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1

발의연월일: 2021. 6. 16.

발 의 자:이헌승·이주환·전봉민

金炳旭・김도읍・박성민

김정재 · 김석기 · 임이자

서병수 · 김미애 · 정동만

조해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2019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산업·교육·일자리·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 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 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 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 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2조의 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 인접하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이하 "초광역권"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7조제1항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한 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둘 이상의 시·도지사(특별자치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 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3.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4. 초광역권에 속하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초광역권 발 전사업의 내용, 역할분담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2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				
<u>종합계획</u> , 시·군 종합계획, 지	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				
분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초광역권계획: 인접하는			
	<u>둘</u>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			
	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			
	(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			
	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			
	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계획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①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①			
국토종합계획은 <u>도종합계획</u>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종합계획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생략)
-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 (234 至日)	
③	-
초광역권]
계획, 도종합계획	_
	-
	-
	-

① (청챙고 가오)

-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둘 이상의 시·도지사(특별자 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 표
 -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
 화 전망
 - 3.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4. 초광역권에 속하는 시·도지 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초광 역권 발전사업의 내용, 역할 분담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u>도종합계획</u>, 시· 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 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

 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의 한의 기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 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 용한다.
-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 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 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l 20조(계획	간의	조정)	1	
	<u>초</u>	광역권	계획,	도
<u> 종합계획</u>				

- 1. ~ 3. (생 략)
- ② ③ (생 략)
-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생략)
 - ②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1. (생략)

<신 설>

2. ~ 8. (생략)

<u>.</u>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① (현행
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
항

2. ~ 8. (현행과 같음)